

#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안내

- 1. 관련
  - 가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
  - 나. 2020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(제5편 중 제공인력 관리)
- 2.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, 2020.1.28.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,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3. 각 지자체(보건소)는 중국을 다녀온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,
  -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는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(1일 1회 이상)하여 질환(증상) 발생 시 대체 제공인력을 투입하는 등 이용자가 안 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지침 제5편 **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는 질환(증상)**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, ②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, ③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, ④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, ⑤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

- 4. 아울러, 제공기관에서는 제공인력 집합교육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' 등(붙임)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하고,
  - 제공인력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음에도 이용자가 막연한 불안 감으로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 시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사항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체 노력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.
  - 2. (카드뉴스)\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\_1339콜센터\_버전. 끝.

보건복지무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건강증진과장), 부산광역시장(건강정책과정), 대규광역시장(출산보육과장), 인천광역시장(육이지원과장), 광주광역시장(건강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장(보건의료과장), 울산광역시장(복지인구정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(건강증진과장), 경기도지사(북부보건위생과장), 강원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 충청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출산보육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건강안전과장), 전라남도지사(사회복지과장), 경상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경상남도지사(가족지원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, 보건복지상담센터장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, 사회보장정보원장

협조자

시행 사회서비스사업과-322 (2020. 1. 2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3228 팩스번호 044-202-3956 / whiteink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